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관리 합리화방안 연구

한상욱 · 최재용* · 이춘원** · 김임순 · 전숙진 · 한정희
아태환경 · 경영연구원,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동성엔지니어링**

Introduction to the Rationalized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s

Han, Sang-Wook · Choi, Jae-Yong* · Lee, Chun-Won** ·
Kim, Im-Soon · Jeon, Sook-Jin · Han, Jung-Hee
Asia-Pacific Environment & Management Institut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Dong Sung Engineering Co.**

Abstract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has been adopted and supplemented as inspection measure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Meanwhile it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that there is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and EIA. Often the agre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not been fulfilled due to the argument of the cost, timing and situations of construction sit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search of the rationalized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harmonize th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unreasonable aspects of the current EIA execution process.

As to comply with the purpos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ree different but complimentary source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foreign case studies of Japan, U.S.A. and Canada, and interviews with 73 experts. Finally, improved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reflecting the present process of EIA.

Keyword: EIA process,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I. 서론

우리나라에서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시행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영향의 발생, 예측된 영향의 양적, 질적 변화에 대한 인지와 검증의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사후관리가 수행되었고, 수행방법에 대한 보완이 있어왔지만 환경영

향평가와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저감 등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형식적인 요식절차의 이행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한상욱, 1999a).

또한 적절한 저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협의 내용의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현장에서의 비용의 문제, 시기의 문제, 현장여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관리·감독 기관의 인력부족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함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들의 개선과 더불어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평가지 환경상의 악영향의 저감 및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방안의 재설정 등을 위하여 인허가 공무원, 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기관, 개발사업 수혜기관,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및 선진외국 사례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사후관리제도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정의에서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제1조의 목적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UNEP(1997) EIA Training Resource Manual에서는 “모니터링과 감사는 프로젝트가 수행됨에 따라 어떤 영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예측된 범위로 제어될 것인지,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측치 못했던 영향들이 조절되거나 완화되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며,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성취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관리계획의 주기적 검토와 변경을 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걸쳐 최선의 행위를 통한 환경보호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 모니터링과 감사는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환류과정(feedback) 또한 제공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보호행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후감시와 감사라는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전 미리 환경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외국에서는 Monitoring 또는 Follow up, Auditing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업계획의 구상,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조정·확정, 사업계획의 집행·관리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본다면 예비검토단계, 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승인기관의 의사결정 이후의 협의내용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괄한 개념으로 환경관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후관리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과 이의 확인감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한상욱,

1999).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의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사후관리는 사후조치, 감독, 이행점검, 모니터링, 영향조사 등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모든 사항은 미래에 반드시 예측된 상태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나 영향의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하고 오차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저감방안 등의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은 크게 구분하면 감지되지 못하는 영향의 발생, 예측된 영향의 양적, 질적 변화에 대한 인지와 검증의 수단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관리의 절차를 일반화시켜 볼 때, 사업자가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의 예측·평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로 문서화하여 환경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통보, 인·허가 승인기관에 의한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 및 이의 승인 그리고 이의 이행과 더불어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재평가, 설계에의 반영 그리고 이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경감사가 포함될 수 있다. UNEP는 개발계획의 제안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과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관리과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UNEP의 제안과 함께 선진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후관리제도와 접목 또는 참고가 가능한 몇 가지 사례가 분석되었다. 특히 일본 동경도의 사후관리계획서 수립, 미국의 Monitoring결과와의 공개,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청의 연차보고서 작성 등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적정화, 투명성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본받아야 할 제도로 사료된다.

한편 분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후환경조사 결과를 어떠한 형식이든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어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반드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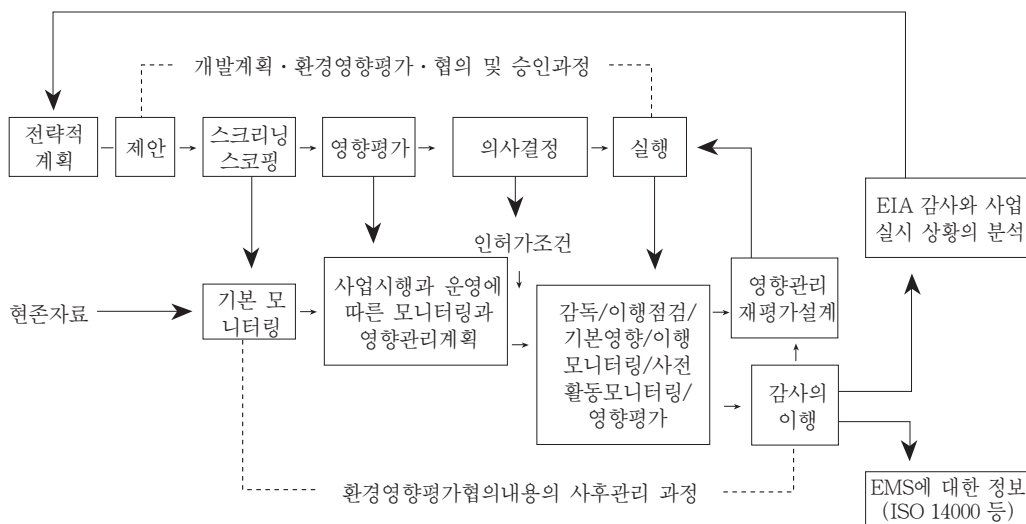


그림 1. EIA의 과정과 모니터링과정(UNEP, 1997)

표 1. 외국의 우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사례

국가명	사후관리제도	주요내용	
일본	주민참여	• 주민을 포함한 자문단을 사업자가 구성하여 조언·지도를 받음	
	검 증	• 불확실성이 큰 사업 등에 대하여 사후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재예측하고 평가과정의 적절성 검증	
	주민공개	• 사업자는 보고서의 열람, 팜플렛(개요 보고서)의 배포, 도·부·현 등에서 매년 발행하는 환경백서, 기업이 발행하는 환경 리포트에의 기재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조사결과 등을 공표하는 동시에 공표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전자 매체에 의하고 보관하고, 필요시 제공. • 지역주민 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등을 설명.	
	동경도	사후환경계획 수립	• 지사(승인기관)가 사업별로 자문회의에서 정한 항목, 방법, 범위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사후환경조사계획 수립
		주민공개	• 사업자의 사후환경조사계획서를 지역주민에게 공개
		대상사업조사	• 예측 평가한 항목에 관계되는 시설의 종류, 규모, 구축, 가동 등의 상황 및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상황을 조사하는 것
미 국	Monitoring	• Monitoring 결과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개	
캐나다	공개등록 대상	• 주무관청에서 유지관리(평가와 사후관리를 포함한 일련의 내용)	
	주민공개	• 주무과정에서 관련정보의 간편한 접근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인터넷 등)	
	추적조사	• 추적조사는 그 이행을 국가가 보증 • 추적조사의 결과는 무조건 주민에게 공개	
	연차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청의 1년간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활동을 보고서로 국회에 제출함	

되어야 할 제도의 하나로 판단된다. 위의 표 1에 외국의 우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를 요점 정리하였다.

III. 협의내용 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후관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대표성 있는 의견을 파악하고자 인허가 공무원 22명, 환경부 공무원 11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18명, 전문기관(대학 또는 연구소) 5명, 개발사업 수행기관(국영기업체, 행정관서) 13명, 기타 시민운동단체 등에서 4명 전체 73명을 설문 조사 하였다. 다음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 제도의 인지도 및 필요성

협의내용관리제도의 인지도는 설문조사결과 전체의 90% 이상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도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협의내용관리제도의 필요성은 전체응답자의 91.8%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내용 관리의 사업자, 인허가승인기관, 환경부, 평가대행자 등 모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각 기관별 협의내용 관리실태

개발사업 수행기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협의내용의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발사업 수행기관 전체적으로는 잘되지 않고

있는 편이거나 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4.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협의내용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협의내용 이행실태

협의내용 관리대상 사업장 수는 '99년 현재 총 1,044개이며, '99년 전반기에 조사 확인된 사업장 수는 302개로 전체의 28.9%로 나타났다. 조사 확인된 사업장수에 대한 미이행 사업장 수의 비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9년 현재 미이행 사업장 수의 비율은 36.1%로 조사되어 '91년의 74.0%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4. 주요 협의내용 관리 수단별 시행현황 분석

1) 사업승인 단계

사업의 승인단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시점부터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승인 신청서를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협의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충분히 반영된다 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명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전반적

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1.6%에 달하며, 승인기관이 사업계획에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설문 대상자의 50%가 검토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변하여 승인기관이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환경관련 사업계획의 승인과정에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착공단계

착공단계에서의 협의내용 이행관련 주요사항은 공사착공 통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사업승인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과정에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승인기관의 장,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단계에서의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는 “잘 비치되어 있다”가 13.1%, “대체적으로 비치되어 있다”가 65.9%로 조사되었으며, 협의내용 관리대장 형식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이 적절할 편이라고 한 응답자가 50%, 적절치 못하다거나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2.2%로서 협의내용 관리 대장의 비치는 이루어지나, 관리대장의 양식에는 형식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주어 작성양식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 공사진행 단계

공사진행 단계란 착공단계 이후부터 공사완료

표 2. 미이행 사업장 관리현황

(단위 : 개소)

구분 \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조사확인 사업장수	339	448	594	243	311	408	440	469	302
미이행 사업장수	251	295	345	135	151	202	228	214	109
대비(%)	74.0	65.8	58.1	55.6	48.6	49.5	51.8	45.6	36.1

주) '99년도의 조사확인 사업장 수는 상반기 실적임
 자료: 환경부 관련공무원 면담자료

까지의 단계를 말하며, 이 단계는 협의내용 관리·감독기관의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관리감독기관의 현장 방문조사 실시사례 조사결과 환경부(청)는 전년도 말에 수립한 현장조사계획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중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다음 표 3에서 보듯이, '99년 협의내용 관리대상 사업 중 이행점검 대상 사업 52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302개 사업장의 현장 이행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총 1,044개 관리대상 사업장의 수에 비하여 관리기관의 사후관리 인력은 약 10~2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1인당 약 50~100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의내용의 미이행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공사 진행단계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99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면 주로 발생하는 민원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총민원사례 38건중 19건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없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환경부(청)와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자는 2개 기관에게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행정처리가 중복되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원화된 관리·감독체계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일원화되었을 경우 어떠한 기관이 적정한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승인기관 27.4%, 환경부(청)가 45.3%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모든 사업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므로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이다. 공사 진행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서로 통보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 수행기관 현장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기관에게 관리·감독의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계공무원, 평가대행업체 및 전문기관에서 찬성률이 높아 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기관에 관리·감독의 권한 일부를 부여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사업자 및 시공자에 이행 촉구'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시설이용 단계

시설이용 단계는 공사완료후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부 장관에게 공사완료 통보 이후 시설을 이용하는 단계이다. 공사완료 후 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기관의 협의내용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협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 사항에 대하여 지속관리를 실시한다.

공사완료 후 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지속하는 사업장은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승인기관의 장,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표 3. 조사확인 대상사업장의 조사확인 및 조치사항

구 분	환경부(청) ¹⁾	승인기관 ²⁾
대상사업장수	302개소	20
조사확인 사업장수	302개소(100%)	7(35%)
이행촉구	109개소(36%)	5(25%)
공사일시 중지	2개소	0

자료 1) 환경부 관련공무원 면담자료

2) 사례조사 분석결과

야 하나, 시설이용 단계에서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기록 유지의무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련한 사항이 없다.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시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도 없어 이러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후관리제도 및 실시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도, 협의내용 관리 등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외국제도

구 분	주요 문제점	개선 방안
협의내용의 사업계획반영 확인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통보시 승인기관과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반영여부 확인 어려움(협의이후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업승인 단계이후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이 반영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통보시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검토강화 사업승인 단계이후 착공시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확인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범위에 포함 착공시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계획서 작성 제출(일본 제도 및 국내 품질, 안전제도 도입)
통보의 의무 (착공, 관리책임자 등)의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의 행정적 중복성 협의내용관리의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내용관리의 주체를 승인기관으로 일원화.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계획서에 포함시켜 일괄 제출토록 간소화 (착공, 관리책임자, 관리대상)
지역주민 참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단계의 주민 참여 결여 주민의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파악 곤란 지방의제21등 세계적 조류인 주민참여에 역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에서 사후관리 결과까지 관련자료를 게재하여 필요한 주민이 자료를 확보토록 함 (캐나다 제도 도입) 지자체 (읍, 면, 동 단위) 및 현장에 비치하여 관련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필요시 공람 및 전자매체로 제공 (일본제도 도입)
관리감독 기관의 현장 조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의 협의내용관리 인원부족으로 사업장 방문조사 어려움 ('99년 1044건/70여명)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이행 조사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감독 기관을 승인기관으로 일원화.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현장조사 의무화.
미이행시 조치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제재 수단이 미약하여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의지를 약화시킴 승인기관의 협의내용관리 의무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수단의 강화 승인기관의 관리, 감독 결과 환경부에 정기제출 의무화
감리자의 역할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자의 기능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못하여 협의내용관리의 지속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수행지침 등 환경관리 관련규정을 안전 및 품질관리 수준으로 개정. 안전 및 품질관리의 일부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도입. (시행계획서, 시행비용, 점검자격 등)
관리, 감독 기관의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의 협의내용이행 관련부처의 이원화로 행정처리 중복 협의내용관리의 주체가 2원화 되어 관리의 공백발생 환경부는 모든 대상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업무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감독 관련부처의 일원화 환경부는 협의내용관리 지침서 제공 및 승인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 유지 환경부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의 관리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 승인기관의 관리, 감독결과 환경부에 연간 1회 제출 의무화
이용시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의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운영시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의 준용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운영시는 관리책임자 기준개정 이행의무를 가진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내용 이행을 위하여 관련조직을 구축 및 유지할 수 있는 자 - 협의내용 이행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자

및 유사제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관리·감독 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관리·감독기능의 비효율성과 관련제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불합리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들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관리개선방안과 필요성을 본고에서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내용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여부 확인 미흡, 지역주민 참여 미흡, 관리·감독기관의 현장조사 미흡, 미이행시 조치의 소홀, 감리자의 역할 미흡, 관리·감독기관의 이원화 및 이용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앞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한상욱, 1999, 환경문제와 환경대책,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2. 한상욱, 1999a, 환경영향평가제도 -국내외 동향과 향후과제-, 동화기술
3. 환경부, 1999, 2. 환경영향평가법
4. 환경부, 1998, 3. 환경영향평가법령해설
5. 환경부, 1997,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편람
6. 환경부, 1998, 개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편람
7. Government of Ontario, 1985,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Canada
8. Ortolano, L., 1997,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Impact Assessment*, John Wiley & Sons, Inc.
9. Virginia Council on the Environment, 1978, *Procedures Manual and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rogram in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Council on the Environment
10. UNEP, 1978, *Environmental Law Guidelines and Principles*
11. UNEP, 1997, EIA Training Resource Manual, <http://www.environment.gov.au/portfolio/epg/eianet/manual,UNEP>.
12. Weston S., 1991, *The Canadian Federal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Process: An Analysis for the Initial Assessment Phase*, CEARC
13. 環境廳, 1995, 地方公共團體 環境影響評價制度における實施狀況等に關する調査報告書, 企劃調整局
14. 東京都, 1993, 東京都環境管理計劃書
15. 淺野直人, 1998, 環境影響評價の制度と法, 信山社
16. 環境影響評價制度研究會, 1996, 環境影響評價制度の現狀と課題について